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6월 2일

3. 제안이유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나. 제4조(시험의 이용제한) 규정 삭제

○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음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전부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 제2조 등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4조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입법예고('17. 4. 21.~'17. 5.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